전 학생 모두가 성공하는 군산 부설 명품 교육

『2021 부설 교육』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 지정 상설 연구학교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The Attached Gunsan Elementary School of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ttp://school.jbedu.kr/ksbs

Ⅰ. 우리 학교의 비전

경영관

학생 인격과 능력을 존중하고 소질 및 잠재력을 계발시켜 모두가 성공하는 교육

교육목표

도덕인	창조인	심미인	건강인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어린이	타고난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여 창의력을 발휘하는 어린이	다양한 정서 활동을 통해 아름다움을 가꿀 줄 아는 어린이	건전한 생활습관을 기르고 몸과 마음이 튼튼한 어린이

기본방향

학교상	학생상	교원상	학부모상
초등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	새롭게 생각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꿈을 키우는 어린이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존경받는 교원	교육을 이해하고 교육공동체에 적극 참여하는 학부모

감동과 성장이 있는 Unique 7 군산부설 명품교육

Unique 7 명품교육

중점

Uni 1 명품 교실수업

- '독도락(樂) 프로그램을 통한 독도교육 활성화' 연구학교 운영
- 공립,연구교과별 수업공개
- 교육실습생 수업지도
- 창의·인성 융합인재교육
- 학년별 현장체험 교과교육

Uni 2 명품 창의교육

- 창의학습장 활용 생각 교육
- 아버지와 함께하는 창의체험교육
- 체험중심STEAM선도학교 운영
- 로봇동아리 운영
- 미래역량워크북 활용 창의활동

Uni 3 명품 인성교육

- 또래상담활동을 통한 바른 심성 함양
- 학교형제 이촌활동 운영
- 옥구향교 인성예절교육
- 다도인성예절교육
- 장애 이해 교육 활동 전개
- 친구사랑주간 운영
- 독도교육주간 운영

특색

Uni4 명품 진로교육

- 비전워크북 진로활동
-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 미래역량워크북 개발·적용
- 비전 벽화 타일
- 비전선포식
- 리더십 캠프
- 진로교육주간
- 특화 방과후 교육

특색

Uni5 명품 감성교육

- 학년악기 선정 지도
- Music Festival
- 푸른소리 국악관현악,오케스트라,합창부,중창부 운영
- 팔마동산학습발표회
- 팔마누리신문,문집발간

Uni6 명품 건강교육

- 119안전체험교육
- Sports Festival
- 부설컵 개최
- 교과통합성교육강화
- 토요스포츠교실운영
- 친환경 식생활교육
- 재난대피훈련 교육

Uni7 명품 외국어교육

- 원어민 활용 TEE 영어수업진행
- 영어골든벨
- 중국 자매결연 학교 교류활동 추진
- 1~2학년 중국어교육
- 영어체험센터입소교육
- 영자신문발간

Ⅱ. 2020학년도 부설 교육 이렇게 했습니다.

1. 내실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

가. 기본학력 정착을 위한 평가 실시

- 기본학력 정착을 위해 진단평가 실시
- 학습자의 수행 정도를 알아보고 도와주는 수행평가 및 교사별 과정중심 평가

나. 소질과 적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 활동 전개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한 예술 영재 교육 실시
  - 제42회 팔마동산종합학습발표회 재능 발표(영상 송출을 통한 비대면 행사 진행)
  - 5,6학년 1인 1악기 지도(5학년: 소금, 6학년: 단소)
- 꿈과 끼를 키우는 비전교육 실시
  - 진로체험학습의 날-6학년 부설초 선배와의 만남 및 전문직업체험 실시
  - 꿈타일 벽화 만들기, 비전발표회 실시
- 수익자 부담의 방과후학교 실시(20개 부서 운영)
  - 컴퓨터, 중국어, 종이접기&토탈공예, 첼로, 우쿨렐라&통기타, 플룻, 피리, 바이올린Ⅰ, 바이올린Ⅱ 미술, 과학실험, 주산, 로봇과학, 대금&소금, 영어회화, 방송댄스, 발레, 해금, 가야금, 그룹밴드&색소폰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한 컴퓨터, 한자, 중국어, 창의교육, 보건, 학년특색사업, 이촌활동
- 아침독서활동을 통한 깊고 폭넓은 사고력 지도
- 학교 합창부 및 중창부 운영
  - 여름방학 캠프 실시
  - 전남초등동요작곡연구회주관 창작동요발표회 '2020 향기로운 동요의 꽃밭'뮤직비디오 제작
  - 전북초등음악교과연구회주관 창작동요발표회 '선생님의 동요선물'중창 및 독창 녹음 참가
  - '선생님의 동요선물' 뮤직비디오 중창 3곡, 독창 1곡 제작 및 배포
  - 국립국악원 주관 '국악율동 공모전' 국악동요 '나는 가야금이 될거야(권혁준 사/곡)율동 뮤직비디오 촬영 제작
- 국악 관현악부 활동
  - 방과후 부서 개인 기량 향상을 위한 연습
  - 토요방과후 국악 관현악단 합주 연습
- 오케스트라부 활동
  - 오케스트라 단원(65명)토요방과후 오케스트라부 합주 연습
  - 여름 및 겨울방학 캠프 실시

다. 과학 및 영재 교육 활동 강화

- 안전하고 내실 있는 과학 실험을 위한 시설강화 및 용구 교체
  - 안전장구 강화(보안경, 내열장갑, 실험용 안전 장갑 등)
  - 소화용구 강화(투척용 소화기, 미니소화기 등 8개)
  - 안전한 실험 약품 관리(공기순환기, 밀폐형환기식 시약장 구입 및 설치, 폐수 및 폐시약통 교체)
  - 과학실무사가 상시 배치되어 실험준비 및 안전한 실험활동 보조
- 2020학년도 군산융합체험마당(보고, 듣고, 느끼는 STEAM 체험전) 개최
  -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14개의 다양한 과학체험부스 체험

- 본교 학생 150여명 참여
- 과학행사 진행
  - 여름, 겨울방학(STEAM)과학캠프 실시(오전:고학년 대상, 오후: 저학년 돌봄학생 대상)
  - 물로켓 제작 및 발사 특강 실시(Space Challenge 대회 준비 희망학생)
  - 드론항공체험교육 실시(1일: 코딩 및 비행원리 파악, 2일: 드론 촬영 및 동영상 편집, 드론 레이싱)
  - 천체과학교실(부설에서 별일이야!) 행사 실시(6학년 대상)
    1부: 천체망원경의 원리, 천체망원경 조작 방법, 간이 천체망원경 만들기 등
    2부: 천체망원경으로 초등달 관측, 그리스로마신화와 함께 하는 별자리 이야기, 행성 관측
  - 자유낙하실험 및 전동비행기 비행 체험 실시
    (구운 계란 껍질을 깨트리지 않고 낙하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충격 완화방법 찾기, 전동비행기 비행을 통해 날개의 조그만 변화로 다양한 비행의 효과를 얻는 방법 알기)
- 과학 및 수학 영재교육
  - 군산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등 각종 영재교육원 25명 이수 완료

라. 6학년 현장체험(감성체험활동)학습 전개

- 4회에 걸친 테마식 체험 프로그램 실시
  - 임실필봉문화촌, 천연염색 체험 및 국악 풍물놀이 체험
  - 도전과 협업의 주제가 담긴 단체 영화관 관람
  - 나만의 반려식물 만들기, 주변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포인세티아 식물 만들어 기르기
  - 어울림 한마당, 6학년 전체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체험

마.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한 기초 체력 향상

- 코로나19로 인한 이론 수업 위주의 기초수영교실 운영(1~6학년)
  - 구명조끼 사용법, 구명환 사용법, 페트병 구조법, 심폐소생술 실습 및 구조요청 등
- 학급별 체육 활동을 통한 새천년건강체조, 민속놀이, 팔마산오르기 활동 등
- 토요스포츠클럽 및 신나는 주말 생활 체육 운영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실시(5~6학년)

바. 영어 교육의 활성화

-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진행
- 원어민과 함께하는 방학 중 캠프 운영
  - 영어기초캠프(3~4학년 대상), 영어회화캠프(5~6학년 대상) 실시
- 영어 행사
  - 영어 골든벨 대회 1회(3~6학년 전 학급 참가)
  - 스마트 러닝 기반 학습을 위한 스마트패드, KAHOOT프로그램 활용

사. 방학 중 교육활동 전개

- 음악캠프 운영
  - 전문 강사 초빙 단계적 합창 및 중창 지도
- 독서캠프 운영
  - 책 읽고 생각 나누기, 그림 그리기, 독서퀴즈, 주먹밥 만들기, 저자와의 만남 등
- 과학 캠프 운영
  - 미래사회 과학과 우리 생활 특강, 카테시안 다이버 만들기, 에어로켓 제작, 에어로켓 발사

- 고무동력기 제작 및 비행 실험, 우산과 비치백 만들기, 회전잠만경 만들기, 배틀! 굴삭기를 만들어 쌀튀밥 이용하여 누가 더 정교하고 빠른지 대결 펼치기 등

- 국악캠프 운영
  - 대금, 해금, 향피리, 소금, 가야금, 타악기 및 관현악 합주곡 '비상'지도
- 오케스트라 캠프 운영
  - 바이올린, 첼로, 플롯, 클라리넷, 콘트라베이스, 팀파니, 타악기
  -'카르멘 서곡','가면무도회 왈츠' 지도
- 영어캠프 운영
  - 스토리텔링, 노래 부르기, 쿠킹, 만들기, 영화보기, 게임 활동
- 비전캠프 운영
  - 진로 탐색, 전문직업인과의 인터뷰
  -켈리그라피스트 체험, 제과떡 체험, 플로리스트 체험, 케잌 만들기 활동 등
- 진로상담캠프 운영
  - MMTIC 성격검사, 성격유형 토론, 상담 체육활동, 감정카드 게임
- SW교육캠프
  - 드라이빙 베이스 브릭 이용 나만의 자동차 모형 만들기, 디버깅 수행, 트레이싱 맵 기반 자율주행차의 미션 해결 과정 단계별 수행하는 로봇코딩 등
- 영어기초캠프
  - 영어 단어 익히기, 역할극, 샐러드, 트레일 믹스 만들기, 스토리북 활동
- 영어회화캠프
  - 우주를 주제로 한 단어 활용 게임, 프로젝트 학습, 프레젠테이션

아. 교내 교원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상설연구학교 주제인'**학생 진로탄력성 지원을 위한 진로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연수
- 창의·인성교육 및 연구회 운영을 위한 맞춤형 현장 연수
- 창의 및 스마트 교육을 위한 연수
- 감성지수 향상을 위한 음악 연수
-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
- 현장 지원형 맞춤형 직무 연수
- 스팀융합교육 연수

자. 1인 1교과 수업공개의 날 운영

- 학습 성과를 높이고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연구를 위한 최적의 학습방법을 적용한 수업공개
- 공립학교 초등 교사 대상, 교육실습생 대상, 학부모님 대상, 본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공개 수업협의를 통하여 우수 수업 기술 공유
- 수업공개 실시: 총 30회
  - 교생실습 중 교사 시범수업 5회 실시
  - 본교의 수업결손과 공립교사의 참관을 위해 방과 후 수업(화: 15:00-15:40, 수: 14:10-14:50) 실시
  - 공립학교 교원 대상 수업 공개(5회)
  - 연구성과발표회의 날 자율장학 수업공개(21개 교실)

차. 학부모 이해 교육 강화

- 학부모 교육 자료 '2020 부설교육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작 및 배포

카. 다양한 방법의 학교 교육활동 홍보

- 학교신문 팔마통신 2회 발간
- 학사력 제작 및 배포
- 학교.학급 홈페이지의 운영
- 학교 문집 팔마동산 41호 발간

타. 발간 자료

- 교생실습 지도교재 (참관, 수업, 실무실습 총 4권)
- 비전워크북: 1~6학년 학년별 6권
- 창의학습장: 1~2학년 1권(국,수,통,창체 등), 3~6학년 1권(국,수,사,과,영,예체능, 창체 등)
- 우리 아이 1학년이 되었어요 (입학초기적응자료)
- 부설 교육 이렇게 하겠습니다.
- 팔마동산 문집 41호
- 미래역량워크북: 학년군별 제작 발간(1~2학년 1권, 3~4학년 1권, 5~6학년 1권)

파. 교단 일기 및 학교종이를 통한 학교생활 안내

- 교실에서 있었던 일과 공부한 내용 안내 및 생활지도
- 학습 준비물 안내
- 교내외 행사 안내 및 신청 접수

2.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시설의 현대화

- 연결통로 증축 및 후관동 내진보강공사
- 급식실 환경 개선
  - 급식실 오수관로 보수, 기존 급수배관 절단 및 우회 설치, 급식실 타일・도색・바닥보수작업 등
- 소방시설 및 방송시설 공사
  - 방화셔터 교체 및 방화문 연동선로 보수 등, 비상방송선로 보호장치 설치
- 1학년 2반 ~ 6학년 3반 각 교실 무선 인터넷 구축
- 본관동, 후관동, 식당・특별교실동 LED등기구 교체
- 체육관 창문 방화유리 교체
- 쓰레기 분리수거장 구조물 제작 및 설치・보수작업
- 노후급식시설 현대화 및 급식기구 교체
- 공기정화장치 설치: 5개학급, 필터 교환 및 임대료 지원
- 정보인프라 고도화사업-신규 정보화기기 도입, 무선 Wifi 구축, 스마트 교실 구축
- 교육기자재 지원: 5학년 재학생 책걸상 72조 교체

3. 교육실습생 지도

구 분	대 상	실습기간	지 도 내 용
참관실습	전주교대 1학년	10. 19. ~ 10. 20.	. 기본소양 . 수업참관
	전주교대 2학년	10. 21. ~ 10. 21.	. 기본소양 . 수업참관 . 효율적 교수
수업실습	전주교대 3학년	11. 16. ~ 11. 27.	. 기본소양 . 생활지도 방법 . 교수학습 지도법
실무실습	전주교대 4학년	6. 15. ~ 6. 26.	. 학급경영실무 . 학교사무처리 . 교수학습지도법

4. 교육부 상설 연구학교 운영(사업 완료)

주제	**학생 진로탄력성 지원을 위한 진로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운영의 필요성 및 목적	21C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라는 교육철학 아래,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해 나가며 학생 진로탄력성 신장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학교의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편성·운영함으로써 전 학생 모두 성공하는 교육을 실현시킨다.
연구대상 및 기간	▶ 연구대상 :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전교생 ▶ 연구기간 : 2019. 3. 1. ~ 2023. 2. 28.
운영 과제 및 실천 내용	◈진로탄력성 지원을 위한 물적·인적 환경 재정비 ▫ 학생 진로탄력성 지원을 위한 물적·인적 환경 재정비 ▫ 학부모 및 교사 대상 심화 연수
	◈ 심화·발전된 맞춤형 진로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재구성한 심화·발전된 맞춤형 진로교육과정 편성·운영 ▫ 심화·발전된 맞춤형 진로교육 자료 개발·적용
	◈ 심화·발전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감동과 성장이 있는 명품 진로역량 기르기 ▫ 심화·발전된 감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감성적 체험활동 전개
일반화 자료	◈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교육과정 편성 ◈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한 진로프로그램 편성 ◈ 미래역량 워크북 제작 보급 ◈ 비전 워크북 제작 보급
기대되는 효과	◈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진로프로그램 적용 및 일반화를 통하여 체계적인 진로교육 실시 ◈ 학교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적용의 필요성과 방안 제시 ◈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진로의 실제성 확보 ◈ 학생들의 충실한 진로 개척

Ⅲ. 2021학년도 부설 교육 이렇게 하겠습니다.

1.감동과 성장이 있는 Unique 7 군산부설 명품 교육

Uni 1. 감동과 성장이 있는 학습자 중심 명품 교실수업

- 1교사 1연구 교과로 좋은 수업을 위한 수업 공개 및 수업 협의
- 좋은 수업을 위한 동학년 수업 동아리 활동 전개
- 좋은 수업의 발굴과 일반화를 위한 교생대상, 공립학교 대상 수업 공개
-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연수 및 자체 연수 활동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 역량 함양 교육
- 학년별 특색있는 진로탄력성 Project 운영
-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독도락(樂)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 운영
- 학습 진단 주간, 초등성장평가 및 평등교육과 책임교육 실시
- 교사 동아리 활동, 연구 활동을 통한 수업 역량 강화 활동

Uni 2. 감동과 성장이 있는 명품 창의교육

- SW(소프트웨어) 활용 교수.학습 전개 및 로봇동아리 운영
- 팔마산 숲 체험 환경사랑 교육 전개
- 창의학습장 개발.생각 아이콘을 활용한 자기학습력 함양
- 아버지와 함께하는 창의.소통 교육
- 아침 독서 활동, 독서종합시스템에 의한 독서교육 활동
- 창의 과학캠프, 과학탐구대회, 실험중심의 과학실 활용 수업 전개
- 학년별 현장체험학습 확대 운영
- 창의융합인재(STEAM)교육 전개
- 창의적 독서토론 교육 활동 운영 및 학교 신문 및 팔마문집 발간

Uni 3. 감동과 성장이 있는 명품 인성교육

- 학년간 소통으로 학우애를 키우는 이촌활동 전개
- 바른 인성실천 중심 현장체험활동 운영
- 옥구향교인성예절교육
- 다도인성예절교육
- 다름을 이해하는 장애이해교육 활동

- Wee Class 상담활동을 통한 바른 심성 함양
-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및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직 운영
- 물물교환 학교 알뜰장터 운영
- 아름다운 어린이 발굴 시상
- 전교생 이촌 형제 활동을 통한 학우애 형성 및 공동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
- 나라사랑 통일교육, 역사교육 실시
- 독도교육주간 운영
- 독도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교육 실시
-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교통안전교육
- 민주적, 창의적 어린이회 운영
- 자기관리능력 향상 활동 전개

Uni 4. 감동과 성장이 있는 명품 진로교육

- 각 학년에 맞는 맞춤형 비전워크북 제작 활용
- 아침 및 창체시간을 활용한 비전워크북 지도
- 학년군별 미래역량워크북(진로프로그램) 지도
- 전문 직업인과 함께 하는 진로체험학습 운영
- 비전 벽화타일 제작 및 학급 비전 환경판 구성
- Wee Class 상담교사와 함께하는 학생 진로 적성검사, 맞춤형 진로 상담 활동 전개
- 다양한 방과후 활동 운영

Uni 5. 감동과 성장이 있는 명품 감성교육

- 학년 악기 선정 집중지도(오카리나, 하모니카, 단소, 소금)
- 국악 예술 강사 활용 국악 지도(1, 2, 5, 6학년)
- Music Festival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 오케스트라, 국악관현악부, 합창부, 중창부, 그룹밴드 운영
- 1인 1 방과후학교 활동 권장(종이접기, 바이올린, 대금, 가야금, 소금, 플룻, 첼로 등)
- 방학 중 합창.오케스트라.국악 캠프, 독서 캠프, 비전캠프 운영
- 팔마동산종합학습발표회(학생.학부모 공연 관람) 공연부.전시부 발표

Uni 6. 감동과 성장이 있는 명품 건강교육

- 부설컵 체육대회 운영

- 학년에 맞는 수준별 경기 선정
- 부설가족 한마음 Sports Festival 운영
- 토요휴업일 주말생활체육학교(토요스포츠교실) 운영
- 학년별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프로그램 운영
- 보건 안전 교육 강화
  - 7대 안전 교육(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 임실 119 안전체험센터 입소 교육(2.3.5.6학년)
  - 기초수영 실습교육(1~6학년) 운영
- 보건교사, 영양교사 수업을 통한 건강생활 지도

Uni 7. 감동과 성장이 있는 명품 외국어교육

- TEE 수업전개
  -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TEE 수업 진행
  - 영어 교과전담 배정 운영
-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골든벨 행사 및 영어캠프 운영
- 1~2학년 중국어 원어민교사 중국어 수업 및 방과후 학교 중국어반 운영
- 중국 북경 명원교육서원실험소학교 자매결연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한자교육 시간 배정 운영

2. 부설의 특수 업무

가. 교육실습생 지도

구 분	대 상	실습기간	지 도 내 용
참관실습	전주교대 1학년	4.19.～ 4.23.	· 기본소양 · 수업참관
	전주교대 2학년	10.11.～10.15.	· 기본소양 · 수업참관 · 효율적 교수
수업실습	전주교대 3학년	11.15.～12.10.	· 기본소양 · 생활지도 방법 · 교수학습 지도법
실무실습	전주교대 4학년	5.24.～ 6.18.	· 학급경영실무 · 학교사무처리 · 교수학습지도법

나. 지역 선도 학교 역할 수행

-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
- 교육부지정 상설연구학교 연구내용 일반화
- 학습지도방법 개선을 위한 공립학교 교사 대상 공개 수업 실시

3. 교육부 상설 연구학교 운영

주제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운영의 필요성 및 목적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및 교원의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변화된 교육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독도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독도 사랑 실천을 위한 독도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연구대상 및 기간	▶ 연구대상 :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전교생 ▶ 연구기간 : 2021. 3. 1. ~ 2023. 2. 28.
운영 과제 및 실천 내용	◈ 독도락(樂)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환경 기반 조성 — · 독도교육을 위한 물적·인적 환경 기반 조성 ·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구성원 역량 강화 ◈ 독도락(樂) 프로그램 구안·적용 — · 독도락(樂)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독도락(樂) 프로그램을 위한 창체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생 맞춤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 · 독도 감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학생 체험중심 독도교육 전개
일반화 자료	가. 맞춤형 독도락(樂)프로그램 교육과정 편성 나. 체험 활동을 통한 독도 프로그램 편성 다. 미래역량(독도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워크북 제작 보급
기대되는 효과	◈ 변화된 교육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한 학생 맞춤형 독도교육 프로그램 적용 ◈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독도교육 활성화에 기여 ◈ 다양한 독도체험활동을 통한 독도사랑 및 영토주권의식 함양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생활규정

제3장 학생 생활

제21조【기본행동】

① 학교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②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③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⑤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⑥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⑦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제22조【수업 태도】

①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② 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⑥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제23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① 학교의 장,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보장한다.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여가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의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지킨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제24조【용의복장】

① 복장은 반드시 군산부설초등학교가 정한 교복을 착용한다.
교복은 동복, 간복, 하복으로 구분하여 입으며 명찰을 단다.
단, 겨울철에는 교복 위에 학교가 지정한 노란색의 코트를 입을 수 있다.
또한, 간복을 입을 시는 흰 타이즈나 목이 긴 흰 양말을 신는다.

② 체육 수업 시간에는 학교가 기정한 체육복을 입고 반드시 운동화를 신는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④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또한 과한 화장, 머리 염색, 귀걸이 착용 등은 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그리고 문신 등의 신체 훼손 행위는 절대 금한다.

제25조【시설이용과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②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얻는다.
③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④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26조【개인 소유물】

① 다른 학생과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27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특별히 허락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5. 인권침해 또는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8. 차량이나 오토바이

9. 기타「청소년 보호법」제2조[1]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물건 등

제28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과 교직원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그것을 사용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7조 제1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27조 제1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다른 사람과 흡입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③ 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

④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는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29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① 제27조와 제28조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현행법상

---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 · 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 · 게재 · 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 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이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은 학교가 보관하며, 즉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

②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학생의 물품은 5일 이내에 보호자와 상담한 후 즉시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교육활동 시간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가 보관할 수 있다.

제30조【전자기기 사용】 2)

① 학교교육과정 운영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를 3회 받으면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한해 5일 이내에서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제31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을 사용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

2)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3조 ④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강제하기보다는 학생에게 사용예절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학생 스스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휴대전화기와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더 바람하다는 의미이다. 학교에 따라 등교할 때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하교할 때 되돌려주는 방식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나 사적소유물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같은 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휴대전화 보관 후 분실 시 학교는 우선 분실신고를 한 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하면 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적정액을 지급한다. (교육부), 학교 관리 중 분실한 휴대폰 등 보상 지원계획 안내(인성건강과-35456 2013.12.17.)

※ 일부 학교의 학교규칙에서 학생들의 학교 내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한 벌칙으로 전자기기를 학교가 상당 기일 동안 일시 수거하는 사례가 있음.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전자기기를 휴대하지 못해 안전과 관련된 긴급 상황 시 구조 요청 등을 할 수 없는 등 안전이 우려됨. 학교규칙 운영 및 제·개정 운영 안내(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2919 2014.5.19.)

※ 학생개인물품 소지 관리에 관한 정책권고(민주시민교육과-3800 2019. 5. 3.)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④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32조【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하며,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3)]

1. 도구를 이용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3. 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제33조【교사의 권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적 상담과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행동개선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4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3) 체벌금지 조항과 교사의 권한 및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에 관한 항목을 반드시 넣도록 권고하며,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의 준거가 되기도 하며 최소한의 학생지도의 기준선을 명시한다는 의미가 크다.

※체벌 금지관련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① 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4. 망가진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5. 학부모 통보와 상담
6.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36조【등하교 생활】
① 등·하교 시 통학 방법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고 학부모 차량이 학교에 진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개인의 의사에 따라 셔틀 버스를 이용 시 스스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다.
③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자전거, 킥보드의 등하교는 금지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생활 안내

아침 교통안전 지도시간 운영	▶8:10~8:50 - 담임교사(담당교사), 녹색어머니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분배 후 교통지도
▪ 등교시간 운영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 앱을 이용한 자가진단 참여 후 등교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8:50까지 등교 허용 (학생 거주지가 군산 지역 전역에 분포되어 있어 등교시간이 집중되지 않으므로 학년별 등교시간은 따로 구분하지 않음)
▪ 수업시간 운영	▶2반 기준 5분씩 시간차를 두고 운영 예시) 1반- 1교시 8:55~9:35 쉬는시간 9:35~9:45 2반- 1교시 9:00~9:40 쉬는시간 9:40~9:50 3반- 1교시 9:05~9:45 쉬는시간 9:45~9:55
▪ 하교시간 운영	▶학생들이 겹치지 않게 시간차를 둔 탄력있는 학사 운영
▪ 점심시간 운영	▶학생간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학교 급식 운영 방안 - 좌석 회전율 향상을 위한 조리나 배식이 용이한 식단 변경 - 시차배식, 급식시간 연장을 통한 한 방향 식사 운영 <보기> ●: 착석, ×: 공석 ● ● ● | ● ● ● | ● ● ● × × × | × × × | × × × -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식당 내 한 줄 서기 등 - 학생 자율배식대 한시적 운영 중단(단, 배식대에서 추가 배식 가능) ▶학년별로 시차를 두어 운영 - 학년·학급별 급식 시 배식 시간 준수(학생 간 접촉 최소화) 2학년 11:20~ 1학년 11:50~ 5학년 12:10~ (1,2학년은 점심식사 후 4, 5교시 수업 4교시인 날은 13:00 하교, 5교시인 날은 13:50분 하교함) 3학년 13:00~ 4학년 13:10~ 6학년 13:20~ ▶식사 전 발열체크 및 깨끗이 손씻기·손소독 ▶선생님과 함께 식사하기(대화 자제, 자기 음식은 자기만 먹기 등) ▶식사 후 물컵 사용하기(식사 전 또는 식사 중 사용하지 않기) ▣ 학부모님 협조 - 공무 외 학교식생활관 출입 금지(급식모니터링 한시적 중단)
▪ 의심증상으로 인한 미출석 학생의 지도 방안	▶가정학습으로 대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함. 따라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은 교외체험학습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담임교사에게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를 받아야 '출석인정결석' 처리됨(교외체험학습 30일 이내에 포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준수사항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에게는 "등교 중지된 경우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제공

<학생 준수사항>

□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①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또는 손소독제)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가. 식사 전
나. 화장실 이용 후
다. 학교에 다녀온 후(또는 외출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② 기침예절을 준수합니다.
가 기침을 할 때에는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나. 사용한 휴지는 바로 버린 후
다.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①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②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③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등교 중지된 경우 반드시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① 바깥 외출 금지

②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③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④ 식사는 혼자서 하기

<보호자 및 가족 준수사항>

□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하기 전 체온과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시키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②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③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자녀가 등교 중지된 경우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자녀에게 교육합니다.**

① 바깥 외출 금지
②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③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④ 식사는 혼자서 하기

□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가족은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①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②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지합니다.
-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③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④ 개인 물품(수건, 식기류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화장실, 세면대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생 마스크 착용 수칙

□ 학생용 마스크 착용 기본수칙

◇ 학교 일과시간 중에는 마스크를 쓰세요

- ○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스크를 쓰세요
- ○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신설 예정), 면마스크 모두 가능해요
-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의사 선생님과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 상담하고 상담내용에 맞게 써주세요

◇ 이럴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마스크를 즉시 벗고, 괜찮아질 때까지 벗고 있어요. 이럴 땐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떨어지고 이야기를 가능한 하지 마세요
- ○ 운동장, 교정 등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떨어져 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럴 땐 이야기를 가능한 하지 마세요

◇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지켜주세요

- ○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서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얼굴에 잘 맞게 쓰세요
- ○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마스크를 만지지 않아요. 만졌다면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씻듯이 문지르세요
- ○ 마스크를 서로 바꿔쓰거나, 쓰던 마스크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돼요

◇ 마스크를 쓰기 전이나 벗을 때 지켜주세요

- ○ 마스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씻듯이 문지르세요
- ○ 마스크를 벗을 때는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끈만 잡고 벗으세요
- ○ 마스크를 버릴 때는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씻듯이 문지르세요

◇ 마스크를 잃어버리거나, 더러워질 때, 망가질 때 지켜주세요

- ○ 학교에 올 때 마스크를 여유있게 가지고 오고, 마스크를 잃어버리거나, 더러워지거나 망가졌을 때 새 마스크를 쓰세요.
  새 마스크를 쓰기 전까지는 친구들과 가능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 학생용 마스크 착용 세부수칙

◇ 실내에서 지켜주세요

(수업시간)

○ 수업시간에는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토론·영어수업 등과 같이 말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바로 마스크를 벗고 선생님께 알리세요. 괜찮아질 때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좋아요

(쉬는시간)

○ 쉬는 시간에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요

○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화장실 이용 후에는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바로 마스크를 벗고 선생님께 알리세요. 괜찮아질 때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좋아요

(점심시간)

○ 점심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가져다 놓을 때도 마스크를 써주세요

○ 점심을 먹을 때는 친구와 2m(최소 1m) 이상(두 팔을 벌려도 닿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 앉아 마스크를 벗어요. 밥을 먹을 때 이야기를 가능한 나누지 않아요

○ 벗은 마스크는 얼굴에 닿지 않는 바깥쪽이 식탁에 닿도록 잘 놓아두세요

◇ 실외에서 지켜주세요

○ 운동장과 같은 실외에서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두 팔을 벌려도 닿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 실외수업(체육수업, 야외수업 등)을 할 때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두 팔을 벌려도 닿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 다만,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거나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세요

청렴교육(청탁금지법의 이해)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하였습니다.

▣ 학부모님과 관련된 **적용대상**은 공직자 등(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등), **부정청탁 및 금품을 제공한 일반국민**입니다.

▣ 부정청탁의 금지

▶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은 부정청탁 금지 행위 14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

▶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민간인)
⇨ 2천만원 이하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누구든지**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 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금품 등을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유형◆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요!

유형	예시 상황
 신체폭력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목을 조르는 행위 ▶꼬집는 행위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학용품 등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부위에 침을 뱉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에 대해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안티카페를 만들어 험담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하는 행위 ▶특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
 언어폭력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욕설을 하는 행위 ▶험담을 하는 행위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포함)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
 따돌림	▶고의적으로 따돌리는 행위(SNS에서도 포함)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SNS에서도 포함)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SNS에서도 포함) ▶친구의 접근을 막는 등 따돌림을 부추기는 행위(SNS에서도 포함) ▶주변 친구들이 도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책상, 소지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는 행위 등
 금품갈취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등

유형	예시 상황
강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행위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 가정에서 꼭 지도해 주세요!

1.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3.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 역지사지,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4. 자녀에게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5.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친구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6.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과 협의하여 공동 지도하도록 합니다.
7. 자녀에게 모범된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1. 학교폭력 발생 후 학교에서는 사안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2. 사안에 따라 2가지 경우로 처리됩니다.

가. 학교장 자체 해결: 학교폭력전담기구 개최

(**관련학생 측 모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경미한 사안 기준)

-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진단서 회수 불가)
-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피해가 복구되거나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하고 피해학생 측이 인정)
-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전담기구 위원들이 보편적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
-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사안에 따라 조치를 받음

- 위의 4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및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담당 장학사·교육전문가들로 구성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항상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근절하여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 아동학대의 유형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나타나며, 방임은 다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의 형태로 나타난다.

3.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유형	징후
신체폭력	▶ 사고로 보기에는 뭔가 미심쩍은 상흔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나타나는 상처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 화상 자국 ▶ 신체적 상흔으로 자주 병원 감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정서학대	▶ 수면부족으로 인한 휴유증 ▶ 언어장애, 비행, 기행, 퇴행,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갑작스런 폭력성향과 행동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 반응 ▶ 극단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성학대	▶ 질에 새인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입천장의 손상, 성병 감염 및 임신 ▶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방임	▶ 발달지연, 성장장애, 기아, 영양실조, 불균형 영양섭취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지속적 피로·불안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 특정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 예방접종 등 의학적 치료 불이행, 건강상 ▶ 비행 또는 도둑질

4. 아동학대 처벌

1)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아동학대 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성학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상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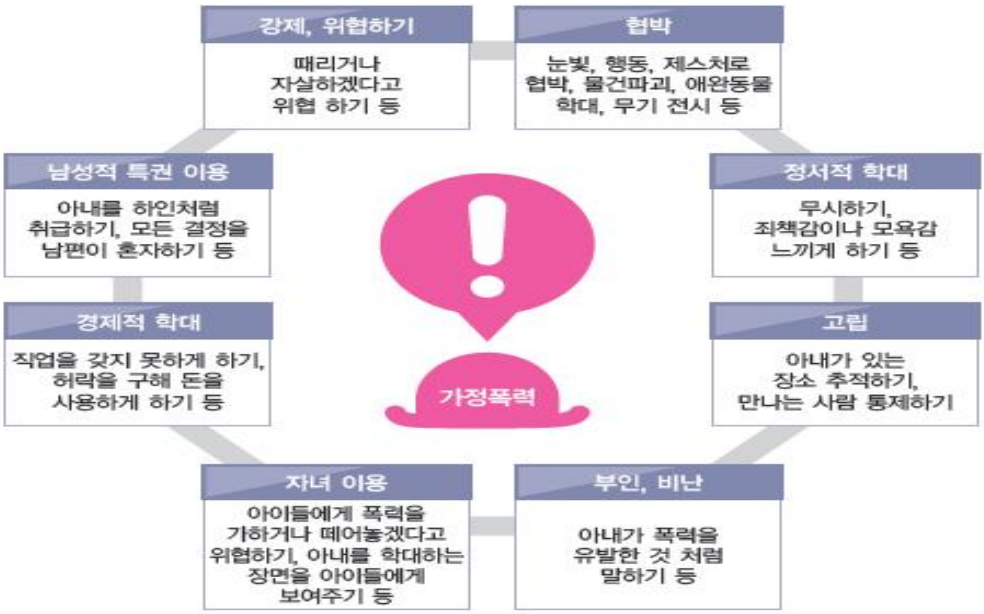

6.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하기

- ▶ 부모의 언행은 항상 자녀의 모델이 됩니다. 언행은 신중히 생각하신 후 해주세요.
- ▶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이나 일방적 훈계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와 대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합니다.
- ▶ 필요 시 학교 선생님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 ▶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존중, 역지사지(易地思之), 책임 및 준법의식 등을 인식 시킵니다.
- ▶ 잘못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한 처벌이나 질책보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합니다.

7.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처하기

- ▶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주변에 있다면 담임선생님 및 학교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112에 신고해 주세요.
- ▶ 나(학부모님)에게 발생했다면 112에 신고하세요. 자녀와 관련(비밀 전학 등)하여 상담이 필요할 때에는 담임선생님께 말씀해 드리세요.
- ▶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상담 전문 기관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학생 인권보호 교육

1. 학생 인권의 의미

1) 인권이란?

인권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려우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인간적 생존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 존엄을 보장 받으며, 인권친화적인 분위기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학생도 인권을 누릴 수 있나요?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을 인권의 주체라고 확인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보호까지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국가의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 제18조의 4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다시 한 번 학생이 인권의 온전한 주체이며, 학교에서도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3) 학생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인권은 개인의 권리 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현되고 완성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개인의 인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받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교육마저 거부하는 것은 학생인권 보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2.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교권보호 이해교육

1 추진 배경

가. 교권침해 사례 증가로 교권 실추 및 교원들의 사기저하
- 최근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증가
- 교육활동 침해로 교직만족도 저하 및 명예퇴직 증가

나.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원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침해

다.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 증가

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기 대응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필요

마. 교권과 학생인권이 공존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정착 필요

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체계

2 교원침해의 유형과 실태

가. 교권침해 유형

구 분	교권침해 유형
학생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교사 성희롱, 수업 진행 방해, 지시 불이행, 재물손괴, 사이버 매체 폭력
학부모	교원에 대한 폭행, 교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고발, 안전사고(민원 제기, 신분 위협,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관계자, 동료교사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교원에 대한 협박

나. 교권침해 현황 실태 분석 결과
- ○교권침해 유형 중 폭언·욕설 건이 많아 사전예방을 위한 바른 언어사용 교육과 침해사안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신속한 대처가 필요함
-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권교육 및 예절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교권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의 법률지원 및 상담으로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가. 위원 구성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교원위원・학부모위원・외부위원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선출

나. 기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교권침해 대응 절차

가. 학교에서의 대응

절 차	대응 요령	유의 사항
사안 발생 및 학교 대응	○ 사고현장 탈피 및 주변 교사에게 도움 요청 ○ 사안 발생 후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학교장은 사안 인지 즉시 적극 개입	○ 목격자 진술, 현장 증거 확보 ○ 학교장 중심 대응팀 구성 ○ 긴급 상황시 112, 119등에 신속히 신고
⇩		
사안 발생 즉시 보고	○ 초.중학교 ⇨ 지역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고등학교 ⇨ 도교육청(교원인사과) ○ 교권보호 담당자 ☎ 239-3299	○ 교원에 대한 신체 폭행, 흉기 소지 협박 및 위협 등 중대 사안은 즉각 유선 보고, 단, 경미한 사안은 학교 처리 ○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사안 보고 및 교권보호 변호사 등의 지원을 받아 학교 현장 지원
⇩		
피해 교원 보호 조치	○ 폭행 피해 등 긴급 상황 발생시 112, 119등에 신고 ○ 학교장 피해교원 상담 및 안전조치 - 학교장 판단 하에 병가 또는 심각한 경우 질병 휴직 활용 안내	○ 추가 피해 발생 방지 및 피해 교사 업무 대행자 지정 ○ 잘못된 사실관계 언론 공표 보안 유지 ○ 가해가 심할 경우 휴직, 비정기 전보 요청
⇩		
사안 처리 경과 보고	○ 동기, 내용, 시기, 관련자 등 조사 ○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면담 실시 ○ 증거 자료 확보 ○ 피해자 의견 확인(법률.행정적 처리 및 학생 징계 여부, 보상 요구 등) ○ 사안 조사 내용 바탕으로 6하 원칙에 따른 상세 보고 ○ 보고 절차는 상급기관 보고와 동일 ○ 필요한 경우(학교장 판단) 사안처리 완결 시 까지 수시보고	○ 사고 경위 파악 및 일지 기록 - 경미한 경우 – 학교 내 교육적지도 - 심각한 경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경우 - 학부모에게 통지, 교사에게 사과 유도 - 선도위원회 개최 및 상담을 통한 교화 ○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 경우 -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행정적 조치 - 상급기관 보고 ○ 학생 안전사고 관련 교권침해 -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 요청
⇩		
조정 및 법적 대응	○ 피해 교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여겨질 경우 학교장이 고발 ○ 학교 자체 고발이 어려울 경우 교육청과 사안 협의하여 교육감이 고발	○ 교권보호 법률지원단(교권보호 법률 지원 고문변호사) 자문 ○ 교원과 학생.학부모 간 분쟁 발생시(미해결 시 지역 및 도교육청 협조 요청) ○ 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종결 및 후속조치	○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 사고 관련자들의 안정적 복귀 지원 ○ 우선 전보	○ 지속적인 관찰을 통한 재발 방지 ○ 가해자, 피해자 상담 및 치료

2021 학교생활기록부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더욱 엄격히 관리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단위학교에서는 매년 학교생활기록부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3회 이상 확인·점검합니다.
- 교육청에서는 매년 소속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감독합니다.

▶ 학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셀프 학생부'는 위법행위**입니다. 시도교육청 현장 점검 시 서술형 항목 기재 내용을 학생에게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사실 기재는 '학생 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되어 징계 양정 기준이 적용되며, 징계 감경에서도 제외됩니다.

▶ 학생 및 학부모가 **사교육기관 컨설팅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2021학년도 학사 일정

<1학기>

일	월 / 요일	3월	월 / 요	4월	월 / 요	5월	월 / 요	6월	월 / 요	7월	월 / 요	8월
1	월	3.1절	목	다도인성예절교육 (1-1,3-1)	토	근로자의 날	화		목	교통안전교육(1-3학년) 기초수영교실 (1-7,4,5학년)	일	
2	화	입학식 · 시업식 방과후, 초등돌봄시작일 친구사랑주간(2-5)	금	다도인성예절교육 (1-2,3-2)	일		수		금		월	
3	수		토		월		목		토		화	
4	목	전교어린이회 후보자 등록(4~5) 학생자단(4-5)	일		화	스포츠페스티벌	금		일		수	국악캠프(4~6)
5	금	학교폭력예방교육	월	식목일 다도인성예절교육 (1-3,3-3)	수	어린이날	토		월		목	
6	토		화		목	인성효예절교육 (3학년~4학년)	일	현충일	화		금	
7	일		수		금	1학기 리더십 캠프 (7~8)	월		수		토	
8	월	교실환경공유	목	구강검사 (3 · 6학년)	토		화		목	기초수영교실 (8-14, 1 · 6학년)	일	
9	화		금		일		수	아버지 참여수업 (3학년-6학년)	금		월	
10	수	학급어린이회조직 (4학년-6학년)	토	호남권부설워크숍 (광주)	월		목		토		화	
11	목	전교어린이회조직 (4학년-6학년)	일		화		금		일		수	오케스트라캠프 (11~13) 영어기초캠프(11~13)
12	금		월		수		토		월	진로교육주간(12~16)	목	
13	토		화		목	학교공개의날 나눔바자회	일		화	학급비전발표회	금	
14	일		수	이촌활동	금	아버지체험학습 (1학년~2학년)	월	정보통신윤리주간 (14~18)	수		토	
15	월	제48회 개교기념일	목		토	교육자대회	화		목	진로체험학습의 날	일	광복절
16	화		금		일		수	이촌활동	금	기초수영교실 (16-22, 2 · 3학년)	월	영어회화캠프(16~19)
17	수	교육과정설명회	토		월	신체발달상황 및 시력검사 (17~21, 3 · 6학년)	목		토		화	
18	목		일		화		금		일		수	
19	금		월	1학년 교생참관실습 (19-23) 독도교육주간 (19-23)	수	부처님 오신 날	토		월		목	
20	토		화	소변검사 (3 · 6학년)	목	인성언어예절교육 (3학년-4학년)	일		화	진로직업체험학습 (6학년)	금	
21	일		수	STEAM 체험의 날	금	현장체험학습 (1학년-6학년)	월	방과후학교 수업공개(21~7.2)	수		토	
22	월	방송기자신문기자 임명 교육상담주간(22~31)	목	장애이해교육 (2교시)	토		화		목		일	
23	화		금		일		수		금	여름방학식	월	개학식 친구사랑주간(23-27)
24	수	이촌활동	토		월	4학년 교생실무실습 (5.24~6.18)	목		토		화	(2학기 시작일)
25	목		일		화		금	역사탐방방학 전부련워크숍 (청주, 25~26)	일		수	학급어린이회조직 (4학년-6학년)
26	금		월		수	이촌활동	토		월	비전·독서·과학· 진공동행사(26-27) 로봇코딩캠프(26-30)	목	
27	토		화	스포츠페스티벌연습	목		일		화		금	학교폭력예방교육
28	일		수		금		월		수	음악캠프(28-30)	토	
29	월	다도인성예절교육 (2-1,4-1)	목		토		화		목		일	
30	화	다도인성예절교육 (2-2,4-2)	금	재량휴업일	일		수	이촌활동	금		월	교육상담주간(30-9.3)
31	수	다도인성예절교육 (2-3,4-3)			월				토		화	
휴일 일수		10		9		12		9		14	54	24(22+2)
출석 일수		21		21		19		21		17	99	7(1+6)

1학기	2021.3.1.~ 2021.8.23.	수업일수: 100일	휴일: 76일

<2학기>

일	월 요	9월	월 요	10월	월 요	11월	월 요	12월	월 요	22년/1월	월 요	22년/2월
1	수		금	국군의 날	월	신입생원서접수(1~5) 방과후학교수업공개 (1~12)	수		토	신정	화	설날
2	목		토		화		목		일		수	설연휴
3	금	리더십캠프(3~4)	일	개천절	수	119 안전체험(5학년)	금		월	독서 · 과학캠프(3~4)	목	
4	토		월		목		토		화		금	
5	일		화		금		일		수	비전캠프(5~6)	토	
6	월		수		토		월		목		일	
7	화		목	현장체험학습 (2학년)	일		화		금		월	개학식 진로교육주간(7~11)
8	수	뮤직페스티벌 총연습	금	현장체험학습 (1학년,3,4,5학년)	월		수		토		화	
9	목	극기훈련(9~10,5,6학년)	토	한글날	화		목		일		수	
10	금	극기훈련(1~4학년)	일		수	이촌활동	금		월	오케스트라 캠프 (10~12)	목	
11	토		월	2학년 교생참관실습 (11~15)	목	신입생 추첨등록	토		화	신입생예비소집	금	종업식, 졸업식
12	일		화		금		일		수		토	
13	월		수	독후말하기대회 (1학년~3학년)	토		월	5학년 영어체험센터 (13~17)	목		일	
14	화		목	독서토론대회 (4학년~6학년)	일		화		금		월	
15	수	이촌활동	금		월	3학년 교생수업실습 (15~12.10) 정보통신윤리주간 (15~20)	수		토		화	
16	목		토		화		목		일		수	
17	금	재량휴업일	일		수		금		월		목	
18	토		월		목		토		화		금	
19	일		화		금	신입생 적성검사	일		수	영어기초캠프 (19~21)	토	
20	월	추석연휴	수	이촌활동	토		월		목		일	
21	화	추석	목	팔마동산종합학습 발표회 총연습	일		화		금		월	
22	수	추석연휴	금	가족둘레길걷기 (22~23)	월		수	이촌활동	토		화	
23	목	119 안전체험 (2,6학년)	토		화		목		일		수	
24	금	뮤직페스티벌 (3학년~6학년)	일		수		금	겨울방학식	월	영어회화캠프 (24~27)	목	
25	토		월	독도의 날 계기교육	목		토	성탄절	화		금	
26	일		화	영어골든벨	금		일		수		토	
27	월	부설컵(6학년)	수		토		월		목		일	
28	화	119 안전체험(3학년) 부설컵(4학년)	목	연구학교성과보고회	일		화	진로상담캠프 (28~29)	금		월	
29	수	부설컵(5학년) 6학년수학여행 (29~10.1)	금	팔마동산 종합학습발표회 신입생홍보(29~5)	월		수		토			
30	목	부설컵(3학년)	토		화		목		일			
31			일				금		월	설연휴		
휴일 일수	12		10		8		13		31		74	23
출석 일수	18		21		22		18		0		79	5

2학기	2021.8.24.~ 2022.2.28.	수업일수: 90일	휴일수: 99일

여름방학(30일) 2021.7.24.~ 8.22.	겨울방학 (44일) 2021.12.25.~ 2022.2.6.	학년말방학(17) 2022.2.12.~ 2022.2.28.

※ 수업일수 : 1학기 100일, 2학기 90일 계: 190일